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성원 교수(한양대학교)

편집위원 이기범 교수(연세대학교)

오선영 교수(충실대학교)

오시진 교수(강원대학교)

김현정 교수(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국제법적 의의와 시사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병도 교수



사진 출처: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35> ICJ 홈페이지

I. ICJ의 역사적 결정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 의견은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그리고 초국경적 환경 피해와 관련된 국가의무에 대해 ICJ가 최초로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앞서 2024년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2025년 7월 3

일 미주인권재판소(IACtHR)도 권고적 의견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ICJ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후 관련 의무는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실제적이고 시행 가능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특히 ICJ는 기후 관련 국가의무의 연원을 기후 관련 조약, 관습 국제법, 환경 조약,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인권규약, 기타 일반 원칙 등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또한 일반국제법상의 국가책임 규칙을 적용하여 기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제위법행위에 해당

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규정한 ICJ의 권고적 의견은 향후 세계적인 기후 거버넌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무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명확히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본다. 다만 향후 이 권고적 의견이 기후 정책과 실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학계, 사법부, 정부, 시민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고적 의견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개관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배경 및 심리 절차의 진행

2021년 9월, 바누아투 공화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 의무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바누아투 정부는 자국 영토와 다른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영토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고 기후 행동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권고적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실제적 행동은 바누아투와 핵심 국가 그룹의 지원을 받은 태평양 도서국 출신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바누아투의 주도와 한국을 비롯한 132개국의 후원하에 2023년 3월 29일 유엔총회는 컨센서스로 결의 제77/276호를 채택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유엔총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ICJ에 요청하였다.¹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4월 12일자 서한을 통해 이 요청을 ICJ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ICJ 절차에는 전례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였다. 서면절차에는 91개의

서면 진술서(written statements)와 62개의 서면 의견(written comments)이 제출되어 ICJ와 그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구두절차에는 96개 국가와 11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공개 심리에서 구두 진술을 하였다.² 이같이 많은 국가들이 ICJ의 절차에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체계, 국가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기후 피해에 대한 법적 결과 등 광범위하게 주제와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심의를 거친 후, ICJ는 2025년 7월 23일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ICJ의 80년 역사상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이번 결정이 다섯 번째이다.

III. 요청된 권고적 의견의 핵심 질문

유엔총회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은, 국가 그리고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와 환경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국제법상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즉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는 무엇인가? 에 관한 것이고, 둘째 질문은, 국가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기후체계 및 환경의 다른 부분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함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과 현재 및 미래 세대를 포함한 개인과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지, 즉 기후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에 관한 것이다.

IV.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

ICJ의 의견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여기서는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하여 ICJ의 판단을 소개한다.

1.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질문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문제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연원의 명확화

ICJ는 기후문제를 규율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으로 유엔헌장, 기후 관련 조약들(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유엔해양법협약, 환경 조약들(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관습국제법, 국제인권법, 기타 국제법의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2) 기후 관련 조약상의 국가의무

ICJ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s), 즉 각국의 배출 감축 의무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는 진정한 법적 의무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만약 국가결정기여가 엄격하지 않거나 신의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당사국의 법적 책임에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생산과 같은 배출을 유발하는 행위 및 배출 증가를 초래하는 보조금 지급까지도 포함된다고 결론지었다.

(3) 관습국제법상 국가의무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번 권고적 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관습국제법상 의무가 기후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히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와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무를 재확인한 부분이다. ICJ는 위 두 가지 관습법상의 의무가 기후체계(climate system)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의무는 관습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CJ는 이들 의무에는 (a)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여,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에서 활동이 기후체계 및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이른바 ‘no-harm principle’³⁾)가 있으며, (b) 국가는 기후체계 및 기타 환경 부분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CJ의 의견 중 특히 ‘no-harm principle’과 ‘due diligence’에 대한 의견은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이다.

먼저 ICJ가 관습국제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부분은 바로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의 적용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다. 이 원칙이 기후체계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가간에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었으나 ICJ는 이 원칙이 기후체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ICJ는 기후체계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ICJ는 기후 맥락에서 ‘상당한 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단락 281-299); (i)온실가스 배출의 대폭적이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의 채택, (ii)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의 확보·분석·활용 및 평가, (iii)기후 관련 조약의 당사국총회(COP) 결정 등에 포함된 관련 규칙 및 기준의 고려, (iv)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모든 국가는 각자의 역량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 (v)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사전 예방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s)의 채택, (vi)위험 및 영향 평가의 수행, (vii)중대한 초국

경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활동을 신의 성실하게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 이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ICJ는 ‘상당한 주의’ 기준은 ‘엄격한 기준’ (stringent)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단락 138).

(4) 환경 조약상의 국가의무

ICJ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관련 환경조약도 기후체계를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5) 국제해양법상 국가의무

ICJ는 유엔해양법협약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 중 하나로 주목하였다. ICJ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지난해에 내린 권고적 의견⁴을 환기시키면서, ITLOS가 채택한 해석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다. ICJ의 판단에 의하면, 국가들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여기에 해양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 ICJ는 국가들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자료와 자국의 역량에 기반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엄격한 수준’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들은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계획된 활동이 중대한 환경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관련 연구 및 정보 공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ICJ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 특히 그것이 해양 영토 및 소도서국의 국가성(statehood)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ICJ는 해안 침식과 같은 물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엔해양법협약이 이미 설정된 기선(baseline)이나 해양 경계를 최신화(update)하도록 국가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 근본

적으로, ICJ는 “일단 국가가 성립되면, 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ICJ는 영토 전체가 수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 국가의 법적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국가성의 지속에 대한 추정’ (presumption of continuity of statehood)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은 해수면 상승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분명히 환영받을 만한 판단이다.

(6) 국제인권법상 국가의무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의 근거로 국제인권법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의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다른 인권의 전제조건(precondition)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 권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이전 결의들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권리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 국제법에서 확고하게 인정되지 않았었다.

(7)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대한 판단

ICJ는 기후 관련 조약들이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하므로 다른 국제법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국가들(특히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권고적 절차에 참여한 상당수 국가들은 파리협정이 관습국제법에 대해 특별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J는 이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ICJ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작업⁵에 의존하면서, 단순히 주제의 중복이 존재한다고 하여 특별법이 자동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ILC에 의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법규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존재하거나, 특정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할 의도로 제정되었다는 명

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ICJ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포함한 기후 관련 조약들과 기타 관련 국제법 법규 및 원칙들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조약 모두 그 전문에서 다른 법체계와 원칙들과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제법규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기후체계의 중대한 피해에 국가책임의 내용

ICJ는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시간적 범위(temporal scope)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고, 그 행위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이 발생하며, 그 결과 손해배상(reparations)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ICJ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여기에는 화석연료 생산, 화석연료 소비, 화석연료 탐사 허가의 부여 또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제공이 포함됨), 이것은 해당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ICJ는 또한 국가가 기후 관련 조약, 관습국제법, 국제인권법 등에서 연유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책임법에 따라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국가책임법의 일반규칙에 따라 그 책임의 내용에는 i) 위법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 의무와 ii) 완전한 배상의무가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완전한 배상이 원상회복, 금전배상, 그리고 만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ICJ는 관습국제법상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대세적 의무(*erga omnes obligation*)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ICJ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른 조약상

의 의무 역시 ‘조약 당사국 전체에 대한 의무,’ 즉 ‘당사국간 대세적 의무’ (*erga omnes partes*)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해당 의무들이 “기후체계 보호라는 모든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수호하며, 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ICJ의 지적은, 모든 국가 또는 조약 당사국이 해당 의무의 이행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다른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비피해국도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V. 평가 및 시사점

ICJ의 이번 의견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제기후법 분야에서 가장 중대한 발전으로 평가되며, 기후 관련 국제법 판례의 진화에 역사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 ICJ가 예상보다 진보적인 판단을 내렸고,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무를 명확히 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비판할 지점이 있다. 다음에서는 ICJ가 다루지 않았거나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ICJ는 국가책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ICJ는 “기후체계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 외에는, 어떤 행위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즉 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기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전형적인 손해배상 방식인 원상회복, 금전배상 또는 만족 이외에 산림 복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복원, 육상 및 해양 서식지의 회복, 해안 침식 방지, 재난 구제, 기술 이전, 재정 지원, 인프라 재건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그 논증에서 명시했어야 한다.

셋째, ICJ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liability)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즉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배출이라 하더라도 기후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ICJ는 법적으로 적법할지라도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기후 피해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적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또는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ICJ는 이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기후 이주 문제는 단지 105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단락(378항)에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다섯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지만, 해당 권리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 내용은 모호하게 제시되었다. ICJ는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멈추고 있다. 결국 ICJ는 ‘건강한 기후에 대한 권리’를 구속력 있는 독립적 권리로, 개인적·집단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리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첫째, ICJ의 의견은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기후 소송에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며, ICJ의 판단 내용은 기후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 소송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한 눈여겨 볼만한 점은 소송절차에서 수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고,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주문과는 별도로 개별 의견을 발표할 정도로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모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국가들의 심각한 비판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내림으로써 ICJ의 제도적 정당성과 권위를 보여주었다.

셋째, 권고적 의견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국제사법기관인 ICJ가 명확히 제시한 법원칙, 특히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 법원칙은 국제법의 일부로서 구속력이 있다. 이러한 법원칙은 각국의 국내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원이나 국제인권기구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와 협력의무를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러한 의무들이 기후체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기후 관련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여전히 이들 의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천명한 점은 법적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법이 기후문제에 명시적으로 대처한 역사적 순간으로 앞으로 수년간 회자될 획기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ICJ의 의견이 새로운 국제법 규칙이나 체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즉, 새로운 법을 창설한 혁명적인 결론은 아니다. 기존의 국제법 원칙(예, 관습국제법, 국가책임, 국제환경법의 원칙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후문제에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보강하고 강화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ICJ가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 점은 ‘기후 관련 국가의무는 실제로 존재하며, 국제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도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
- 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on 29 March 2023, A/RES/77/276,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 2 우리나라는 2024년 3월 서면의견을 제출하였고, 12월 3일 (화) 황준식 국제법률국장과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구두발언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ICJ 권고적 의견 ‘구두절차’ 참여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ICJ 권고적 의견 ‘서면절차’ 참여는 2018년 차고스 군도 관련 권고적 의견(2019)에서였다.
 - 3 ‘no-harm principle’ 은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환경 피해를 방지·감소·통제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2008, pp.275-285; Patricia Birnie, Alan Boyle and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 Oxford 2009, pp.143-152);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6(“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이나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 4 ITLOS,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Advisory Opinion, Case No. 31, 21 May 2024.
 - 5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UN Doc. A/CN.4/L.702 (2006).

⋮ 필자 소개 ⋮

박병도 교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현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